

# 최 신 판 례 예 규

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 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 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 는 것이며,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 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

서면법인-3528, 2019.06.05

## ♦질 의

- 질의법인은 2009.7.21.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던 중.
  - 단체 소재지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포 함되어 기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조합의 매각 요청에 따라
  - 조합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후 기존 시설과 교환하기로 하고 '18.10.18. 교환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마침
- 양도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질의법인의 대 표자로 되어 있으나, 질의법인은 매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서 보고 시,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대차대조표(공 익사업) 상 토지·건물 계정에 계상하여 왔음

## 질의

○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 부동산을 양 도하는 경우,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

#### ♦회 신

귀 질의의 경우,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 ○ 법인세과-411(2009.4.8.)

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 목적사업(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조 제1항의 규 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)에 직접 사용 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제3 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.

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

## 마케팅 Tax Consulting

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에도 각자 지 분비율로 안분된 금액만 법인의 손익으로 반영함

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·부채 및 수입·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소금으로 하는 것임

사전법령법인-89, 2019,06,11

#### ♦질 의

- 주식회사 00000(이하 'A법인')은 주택신축판매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인과 공동으로
  - 서울 00구 00동에 위치한 기존 지상건물을 철 거하고 18층의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 을 하기위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함
- A법인과 개인은 부동산 필지를 2:1 비율로 취득 하였고 공사대금 등의 조달을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
  - 본건 부동산에 대해 대주들을 1순위 우선수익 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

질의

○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 업의 자산·부채 및 수입·지출에 관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

### ◆회 신

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.

상속을 포기한 자도 '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,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 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

서면상속증여-1346, 2019.06.12

#### ♦질 의

- (질의1)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았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
- (질의2) 상속포기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 는지 여부
- (질의3) 상속포기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누나들이 상속세를 납부해 아하는지 여부

## ♦회 신
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(「민법」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)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

을 재산을 기준으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」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,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 다.

본점(주사무소)은 시업수행에 필요한 중 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,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

서면법인-3162, 2019.07.02

## ♦질 의

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무소 또는 연구소를 두 어 본점의 일부 인력이 잔류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이 가능한지 여부

#### ♦회 신
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○ 사전-2016-법령해석소득-0576, 2017.03.16.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 63조의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하 여야 하며,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 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세 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 이때 사실상 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 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, 경영계획, 재무 투자, 자산부채의 관리, 주요 회의 개최, 대표 자 및 주요 임직원의 통상적 업무 수행, 회계 서류등 주요 서류를 일상적으로 기록관리 등이 수행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 재하는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 다.